

<별표 8> <개정>

용역의 분류
(제14조 제1항 관련)

1. “기술용역”이라 함은 **건설기술진흥법,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, 건축사법, 전력기술관리법, 정보통신공사업법, 소방시설공사업법,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** 등에 규정한 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.
2. “일반용역”이란 상기 1의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용역(학술연구용역, 시설물분야용역, 정보통신용역,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)을 총칭한다.
 - 가. “학술연구용역”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, 연구, 조사, 검사, 평가,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정책이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.
 - 나. “시설분야용역”이라 함은 청소(위생관리)용역, 시설물경비용역, 시설(물)관리용역과 더불어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,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.
 - 나-1. “청소(위생관리)용역”(이하 “청소용역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·시설물과 옥·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. 다만,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,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.
 - 나-2. “시설물경비용역”(이하 “경비용역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국가 중요시설·산업시설·공공시설·사무소·홍행장·주택·창고·주차장·행사장·유원지·항공기·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·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.
 - 나-3. “시설(물)관리용역”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(소방, 배전, 공조, 급·배수시설 등)에 대한 운전,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.
 - 바. “정보통신용역”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신·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·기술·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/W의 유지보수용역(이하 “유지보수용역”이라 한다)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한다.
 - 바-1. “소프트웨어사업”이란 소프트웨어개발,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, 데이터베이스 구축,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수립을 말하며,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/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. 또한 전자·통신·정보처리분야(자료처리업무 포함)의 전문기술 인력이 필요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.
 - 사. “건설 폐기물처리 용역”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.
3. “기타용역”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2호 용역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용역을 말한다.